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서식] <개정 2020. 12. 31.>

(녹색)

정 비 명 령 보 고 서

제 호 No.

운전자	성명		면허종류	[ ] 제1종	[ ] 대형 [ ] 보통 [ ] 소형 [ ] 특수
				[ ] 제2종	[ ] 보통 [ ] 소형 [ ] 원자 [ ] 건설기계
차 량	( )시 ( )도 [ ] 사업용 [ ] 비사업용 [ ] 관 [ ] 자 제 호		차 종		
			사용주		
교부일시			교부장소		

위의 차량은 「도로교통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명령서를 교부하고 필요한 정비를 하여 년 월 일까지 시·도경찰청장(경찰서장)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기에 보고함

경찰서 계급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경찰청장 귀하

[ ] 위의 차량은 필요한 정비가 되었기에 자동차등록증을 반환함

[ ] 위의 차량은 필요한 정비가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일간 자동차 사용을 정지하고 정비함이 필요하여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함

년 월 일 시 분

경찰서 계급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경찰청장 귀하

정비 불량사항

[ ] 제동장치 [ ] 조향장치 [ ] 주행장치 [ ] 조명 [ ] 매연 [ ] 도장
[ ] 머플러 [ ] 기타 ( )

위 사실을 인정함

년 월 일

운전자 (서명 또는 인)

검인 (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(녹색) 80g/㎡]